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보주체 (요청인)	성명	
	생년월일	
	주소	
대리인	성명	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	
유의사항	1.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 3에 따라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, 삭제로 인하여 자료열람 등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2.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는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금융거래 종료 후 5년,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3.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동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	

상기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귀사와의 금융거래 종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요구인 (서명 또는 인)

동양자산관리대부㈜ 귀하

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수령인 (서명 또는 인)

동양자산관리대부㈜ 귀하